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6조 [사용의 제한]

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6조(사용의 제한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법 제80조 · 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,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· 기구 · 설비 및 방호장치 ·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 12. 26., 2021. 5. 28.>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